

하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발의자 : 정병용 의원

제출일 : 2025. 8.

1. 제안이유

- 가. 기존 조례는 청소년의 ‘노동인권’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어,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보장하는 청소년의 보편적 인권 증진을 위한 포괄적인 제도적 기반으로서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
- 나. 이에 조례의 적용 범위를 노동인권을 포함한 청소년의 모든 기본적인 인권으로 확대하여, 청소년이 모든 생활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안전하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재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명을 ‘하남시 청소년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’로 변경
- 나.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명확화 (안 제1조, 제2조)
- 다. 청소년 인권보장의 기본원칙 및 책무 규정 (안 제3조 ~ 제6조)
- 라. 청소년의 보편적 권리 명시 (안 제7조 ~ 제13조)
- 마. 청소년 인권보장 정책 추진체계 마련 (안 제14조, 제15조)
- 바. 청소년 인권침해 구제 및 지원체계 구축 (안 제16조 ~ 제19조)
- 사. 하남시 청소년인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(안 제20조 ~ 제22조)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한중수)

-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노동인권 보호 중심의 조례 체계에서 벗어나, 청소년의 보편적 인권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적 전환을 목표로 하고, 청소년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재정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,
- 검토 결과, 관련 상위 법령 및 인권 관련 국제기준에 부합하며, 법령이 정한 절차와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

■ 「**청소년 기본법**」[시행 2025. 4. 29.] [법률 제20953호, 2025. 4. 29., 타법개정]

제8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4. 3. 24.]